

의안번호	제 36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
특별회계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3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
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3월 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”의 회계관계직원 명칭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,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(제5조)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
경리관 ⇒ 재무관, 분임경리관 ⇒ 분임재무관으로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
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·관리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징수관·경리관”을 “징수관·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
항 제2호 중 “분임징수관·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징수관·분임재무관”으로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징수관·경리관</u> :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</p> <p>2. <u>분임징수관·분임경리관</u>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과장</p> <p>3. 지출원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</p>	<p>제5조(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징수관·재무관</u> :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</p> <p>2. <u>분임징수관·분임재무관</u>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과장</p> <p>3. 지출원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</p>

관 계 법 령

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11조의7(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)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·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

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
2.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사업비
3.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

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회계관계직원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징수관, 재무관, 지출원, 출납원,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
 - 나.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